

경제관계장관회의 결
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
26-4-1
(공개)

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

2026. 2. 25.

관 계 기 관 합 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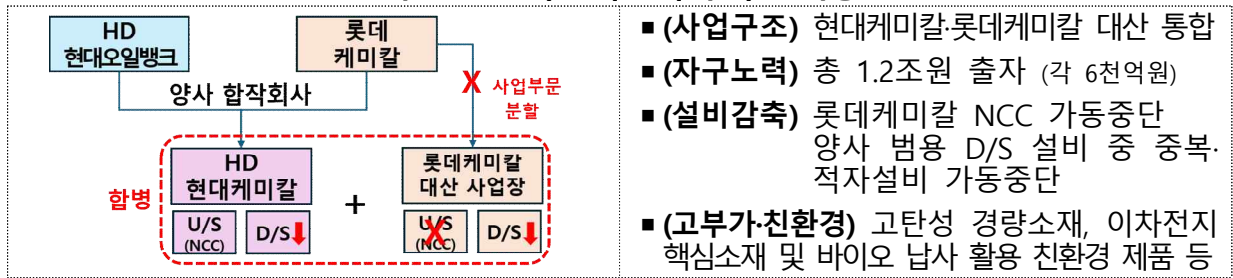
대산 1호 프로젝트*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 (요약)

* HD현대오일뱅크(이하 현대오일뱅크), HD현대케미칼(이하 현대케미칼), 롯데케미칼

□ 프로젝트 개요

- 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 통합 후 롯데케미칼 NCC(110만톤) 가동 중단 및 양사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 가동 축소 (사업재편기간중, 3년)

【 대산 1호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】



□ 대산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 지원 패키지

◇ 2.1조원 규모 이상의 지원패키지로 사업재편 뒷받침

- ① 금융지원 : 영구채 전환 및 신규자금 지원 최대 2조원
- ② 금융지원 외 : 유틸리티 비용, 세제, R&D 등 최대 1,400억원+α

- ① (금융) 가동중단 설비 손상처리에 따른 부채비율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영구채 전환,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 등을 위한 신규자금 지원 등

* 기존 차입금(7.9조원) 금융조건 유지 및 상환유예 포함시 최대 9.9조원

- ② (세제) 기업분할·합병 및 자산취득 관련 지방세(등록면허세·취득세) 감면,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및 설비 중단·자산매각 관련 법인세 부담 완화

- ③ (인허가)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(120 → 90일), 공장 가동 중단이 없도록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 등 인허가 합리화

- ④ (원가) 유틸리티(전기·스팀·연료용 LNG) 비용 절감 지원 및 수입 납사·원유 등 원자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지원 확대

* 전기 : 분산특구제도를 활용하여 한전 대비 4~5% 저렴한 전기요금 적용

열(스팀) : 열 중복공급 금지규정을 완화하여 저렴한 열 공급원 확대

연료용 LNG : 연료용 직도입 LNG 투입 가능 설비범위 확대

원자재 : 원유 및 납사 무관세(0%) 기간 연장, 납사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범위 확대(~26년) 등

⑤ (고용·지역경제)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*,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기간 연장(6개월 → 1년)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확대 등**

*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인정,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중 R&D 연구인력 신규채용 허용

** 지역산업위기대응사업: '25년(2차 추경 신규) 52억원 → '26년 247억원으로 확대

⑥ (기술개발) 주력산업 연계 고부가 첨단품목 전환 지원, M.AX 기반 소재 설계 및 공정혁신 추진, NDC 2035 이행을 위한 친환경 전환 지원

□ **사업재편 기대효과**

① 설비합리화에 따른 대산산단 내 공급과잉 완화

② 정유·석화 수직계열화를 통한 운영효율 향상

③ 고부가·친환경 중심의 기업 포트폴리오 전환

④ 자구노력 및 효율 향상을 통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

□ **향후 추진계획**

○ 기업 분할·합병, 설비감축 등 사업재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* 지원

* ①합병계약 등 체결 및 이사회 승인 ⇨ ②롯데케미칼 대산 분할 ⇨ ③롯데케미칼 대산-현대케미칼 합병 ⇨ ④신설 통합법인 설립 ⇨ ⑤설비감축

○ 석화특별법 신속 시행을 통한 사업재편 지원기반 마련

* 공정거래법 및 타법상 규제특례와 기타 지원사항 관련 세부내용을 규정한 석화특별법 시행령 조속 제정 ⇨ 석화특별법 시행

○ 사업재편과 병행하여 고부가·친환경 전환을 위한 대규모 R&D 지원

○ 사업재편 이후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

* 화학산업 생태계 중장기 경쟁력 강화,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경제·고용 안정대책 등 포함

순서

1. 프로젝트 개요	1
2. 대산 1호 지원패키지	2
3. 사업재편 기대효과	8
4. 향후 추진계획	9

1

프로젝트 개요

1. 사업재편 추진경과

□ 정부는 산경장을 통해 「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」을 발표하고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제시('25.8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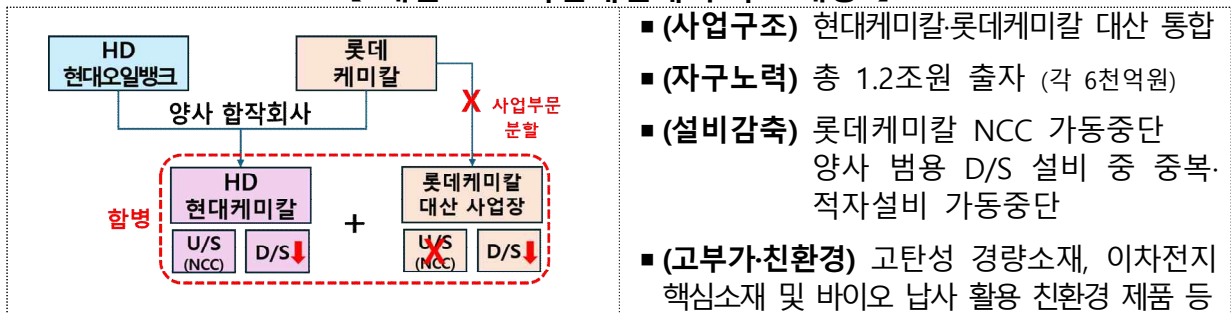
□ 대산 1호 프로젝트 참여기업*들은 로드맵 상의 기한(12월말) 대비 1달 빠른 시점에 최종 사업재편계획서 제출·승인신청('25.11월)

* HD현대오일뱅크(이하 현대오일뱅크), HD현대케미칼(이하 현대케미칼), 롯데케미칼

□ 산업부 예비검토 및 사업재편심의위 심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('26.2.23)

2.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

【 대산 1호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】



□ (구조변경)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 분할 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⇨ 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 완전 통합

□ (자구노력) 현대케미칼 주주인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(본사)은 통합 신설법인 재무개선을 위해 총 1.2조원 증자* (주주사 각 6천억원)

* (지분구조 변화) 현대오일뱅크:롯데케미칼 기존 6:4 ⇨ 5:5로 변경

□ (설비감축) 사업재편 기간(3년) 동안 롯데케미칼 NCC 설비 가동 중단 및 양사 D/S 설비 가동 축소 ⇨ 시설통합 및 생산효율 향상 2,450억원 투자

□ (고부가친환경) 고탄성 플라스틱,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고부가 제품 및 에탄 원료, 바이오 납사 활용 친환경 제품 생산 3,350억원 투자

2

대산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 지원 패키지

◇ 2.1조원 규모 이상의 지원패키지로 사업재편 뒷받침

- ① 금융지원 : 영구채 전환 및 신규자금 지원 최대 2조원
- ② 금융지원 외 : 유틸리티 비용, 세제, R&D 등 최대 1,400억원 + α

1. 투자자금 소요 및 재무여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(산은 등) : 최대 2조원

* 이하 방안을 바탕으로 채권금융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 최종 확정(3월중)

○ **(기업애로)** 사업재편 효과 발생시까지의 손실, 설비통합 및 고부가화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감당할 재무적 체력 부족

- 손실발생, 설비 가동중단에 따른 손상처리 등으로 부채비율 증가시 기업 신용하락 우려에 따른 시장자금 조달 애로

☞ **(금융지원)** 사업재편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 (은행권) 공동*으로 상환유예, 신규자금, 영구채 전환 등 지원

* 「산업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」

① **(상환유예^{현대케미칼, 롯데케미칼})** 사업재편기간(3년) 동안 **협약채무(약 7.9조원)**에 대한 상환유예, 기존 금융조건 유지

※ 수은, 무보는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 물적 분할에 대해 조건없는 동의 필요

② **(신규자금^{현대케미칼})** 설비통합 및 고부가·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자금, 운영자금 등 신규자금 지원(최대 1조원)

③ **(영구채 전환^{현대케미칼})** 시장에서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부채비율 (예:250%) 달성을 위해 기존 대출의 영구채 전환(최대 1조원)

※ 향후 본 방안의 결정, 운영 또는 집행 과정에서 산업은행,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를 포함한 채권금융기관 임직원의 고의·중과실이 없는 행위 및 그로 인한 발생 손실에 대해 행정상 제재 면책 부여

2. 사업재편 과정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

① 적격합병 요건 완화

- **(기업애로)** 합병 이후 설비 가동 중단시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*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이연 등의 혜택 적용 不可

* (사업의 계속성 요건) 피합병법인 설비를 2년 이상 보유하고, 50% 이상 사용

- ☞ **(정부지원)** 사업재편 기업이 중복자산을 가동중단한 경우 적격합병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음*을 명확화 (재경부 유권해석)

*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은 보유사용 의무를 적용받는 자산에서 제외

② 지방세 부담 경감

- **(기업애로)** 사업내용의 변경없이 법인설립 과정에서 분할·합병 및 설비 자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(등록·면허세, 자산 취득세) 부담 발생

- ☞ **(정부지원)** 등록면허세·취득세 감면 확대 (50 → 75~100%, 충남도 조례개정 추진)

③ 법인세 납부 부담 경감

- **(기업애로)** 기업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법인세 납부 부담 증가 우려

- ☞ **(정부지원)** ①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(80 → 100%), ②자산 매각시 양도소득 과세이연 확대*, ③가속상각제도를 활용한 비용조기 인식 등

* (기존) 4년거치, 3년 분할납부 ⇨ (개정) 5년거치, 5년 분할납부 (25.12월, 조특법 개정 완료)

④ 투자·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 부담 경감

- **(기업애로)** 대규모 투자 및 신규 인력채용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흑자 전환시 투자·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 납부 부담 발생

- ☞ **(정부지원)** 사업재편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종료 후 2년까지 투자·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*에 따른 세액 50% 감면 (조특법 개정추진)

* 기업 소득 중 투자·배당·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20% 추가 과세

3. 원활한 사업재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인·허가 합리화 : 20억원

① 기업 분할·합병절차 간소화

- **(기업애로)**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기업 분할·합병절차 진행시 선제적 위기대응을 위한 사업재편 지연 우려

☞ **(정부지원)** ①소규모 분할·합병 요건 완화*, ②주주총회 및 채권자·주주 보호절차 기간 단축** 및 ③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(120일 → 90일) 추진

*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진행 (상법: 신주 발행 10% 이하 ⇨ 기활법: 20% 이하)

** (주주총회) 공고기간(2주 → 7영업일), 소집통지기간(2주 → 7영업일)

(채권자보호) 이의제출기간 30일 → 10영업일

(주식매수청구권) 주식매수 청구(20일 이내 → 10일), 청구대금 지급(1~2개월 이내 → 3~6개월 이내)

② 합병 前 신속한 설비 합리화 예외적 허용

- **(기업애로)**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 전까지 기업간 공동행위가 금지되어 설비 공동운영 등을 통한 조속한 시너지 창출 지연 우려

* (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) 사업자는 계약협정·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으로 합의해서는 안된다.

☞ **(정부지원)** 합병절차 완료 前이라도 사업재편 승인시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한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

③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

- **(기업애로)** 기업 분할·합병시 기존 인·허가 사항 재취득에 따른 공장 가동중단* 가능성 및 인·허가 취득비용 부담 우려

* (예) 기업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신설 법인으로 등록 → 화학물질등록, 석유판매업 등록 등 관련 절차 未완료시 공장 가동 不可

☞ **(정부지원)** 사업 동일성 유지시 인·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인·허가 관련 부담 완화 (석화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)

* (승계) 화학물질등록,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(화학물질관리법) 등

(간소화) 석유판매업 등록, 석유수출입업 등록(석유사업법) 등

4.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가구조 개선 : 690~1,150억원 + α

① 전기요금 : 분산에너지특구제도 활용

- **(기업애로)** 산업용 요금이 빠른 속도로 인상되어 업계의 부담 가중
- ☞ **(정부지원)** 대산 석화단지를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하여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4~5% 저렴한 전기를 사업재편 기업에 공급하도록 지원

② 열 공급 : 공급구역 중복금지 규정 완화

- **(기업애로)** 현행 규정에 따라 설비별 既지정된 사업자로부터 열 구매시 사업재편 후 동일 기업내 설비간 열공급 가격이 달라지는 비효율 발생
 - * 더 저렴한 열 공급원이 있더라도 既지정된 사업자로부터 열을 공급받아야 함
- ☞ **(정부지원)** 기업이 열 공급을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열 공급 구역 중복금지 규정 한시(사업재편기간 내) 완화 (석화특별법 제정완료)

③ 연료용 LNG : 직도입 LNG 공급범위 확대

- **(기업애로)** 저가의 연료용 직도입 LNG 투입이 일부 설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연료비 부담 가중
- ☞ **(정부지원)** 직도입 LN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범위를 확대하여 연료비 부담 완화 (도시가스사업법상 승인완료)
 - * (기존) HD NCC 설비만 가능 ⇨ (개선) HD NCC + D/S 일부 설비(MX) 추가

④ 원자재 : 납사·원유 관세 지원 확대

- **(기업애로)** 주요 경쟁국 대비 높은 수준의 원자재(원유·납사 등) 비용으로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려움 발생
- ☞ **(정부지원)** ①수입 납사·원유 무관세(0%) 적용(~26년), ② 납사 생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범위 확대(~26년)*, ③수출용 원재료 추가 환급** 등
 - * (현행) 납사 자체소비시 납사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중 자체 재소비 물량은 할당 미적용 (개선) 사업재편계획 승인 정유·석화 통합 기업이 납사 자체 소비 시 납사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중 자체 재소비 물량에 대해 할당 적용(~26년)
 - **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정에 장기간 투입·소모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추가 환급

5. 산업·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·고용 지원

① 고용유지 지원금 적용요건 완화

- **(기업애로)** 설비감축後 유희 인력을 고용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이 석화산업 특성*과 맞지 않아 지원금 적용대상에서 제외

* (예) 매출액이 일정 수준이하로 감소해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

⇒ 석화설비는 일정 수준 가동률 유지 필요에 따라 영업이익 적자에도 매출액 유지

- ☞ **(정부지원)**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매출액 감소 요건 완화*,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고부가 R&D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채용 허용**

* 업종, 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

** 필수인력 퇴사자 대체인력이 없는 경우, 신규사업 관련 채용이 필요하나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

②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

- **(기업애로)** 구조적 불황 장기화에 따라 지역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나,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짧아 지원단절 우려

- ☞ **(정부지원)**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('26.2.5., 고시 旣 개정)

* 서산 등 旣 지정지역에 한해서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6개월 추가 연장 근거 마련

③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확대

- **(기업애로)** 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력산업 위기로 인해 석유화학 생산량과 수출, 사업장 수 감소 등 어려움 호소

- ☞ **(정부지원)**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기업에 이차보전·인력양성 등 전용 지원사업*을 통해 유동성 확보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

* ① 지역산업위기대응사업: '25년(2차 추경 신규) 52억원 → '26년 247억원으로 확대

② 이차보전 ^{대출한도} 최대 15억원 ^{이차보전을} 운전자금(중소중견 3%p), 시설자금(중소 2.0%p, 중견 1.5%p)

- 또한,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(중기부),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·상환유예 등 지원중

* (서산지역 지원실적, 25.12월말 기준) 긴급경영안정자금(소상공인) 0.94억원,

만기연장·상환유예 410억원, 보증특례 43억원 등

6. 고부가·친환경 사업구조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: 260억원 + α

○ **(기업애로)** 설비감축 이후 고부가화·첨단화·친환경 전환을 위해 대규모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하나, 불황 지속에 따른 투자여력 부족

☞ **(정부지원)** 기업이 既 제출한 과제는 '26년부터 신속 개발 지원*, 중장기 고부가·친환경 전환**을 위한 대규모 R&D 사업 병행 추진

* 친환경 원료 확보를 위한 동물성 유지 정제 고도화 (130억원, 26~28년)
자동차 전장부품용 PP 신소재 (127억원, 26~30년)

** 목표 : ① **(고부가)** 고부가화율 '25년 30% ⇨ '35년 45%
② **(M.AX)** 소재개발 기간 50% 단축, 공정 에너지 최대 40% 절감
③ **(친환경)** 온실가스 저감 '25년 27만톤 ⇨ '35년 210만톤
④ **(환경규제)** 대체물질 '25년 12건 ⇨ '30년 100건

① 고부가 : 7대 주력산업* 연계 고부가 첨단 품목 전환 지원

*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전기·통신, 미래차, 우주항공·방산, 이차전지, 수소

- 수요기업이 제시한 소재의 핵심 성능요건에 따라 화학산업 생태계 (원료-소재-응용) 전반의 기업들이 고부가·스페셜티 소재 기술개발

② M.AX : AI 기반 소재설계 및 공정혁신 추진

- AI를 활용한 화학소재 설계의 자동화, 생산공정 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공통 데이터 플랫폼 구축

* AI 기반의 공정 자율화·에너지 효율화, 소재개발 가속화, 공정전환 플랫폼 개발

③ 친환경 : NDC 2035 이행을 위한 석유화학 친환경 전환 가속화 추진

- 바이오 원료 전환, 폐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등 친환경 R&D 지원

④ 환경규제 :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대체소재 개발·실증·상용화 지원

- 저위험·친환경 대체물질 개발, 미세 플라스틱 배출 저감 소재 및 친환경 생분해 소재 개발 등 지원

3

사업재편 기대효과

① 설비 합리화에 따른 대산산단 內 공급과잉 완화

- **(업스트림)** 롯데케미칼 NCC 설비(110만톤) 가동중단 및 고효율 잔여 NCC 설비 가동률 향상을 통해 “공급과잉 완화 + 생산효율성 제고*”

* 에틸렌 생산설비 규모 : 195만톤 ⇨ 85만톤 / 설비 가동률 : 80% ⇨ 100%

- **(다운스트림)** 수익성이 낮은 범용제품(PE, PP) 생산설비 가동 중단

② 정유·석화 수직 계열화를 통한 운영효율 향상

- **(운영효율)** 「원료공급 ⇨ 생산 ⇨ 판매」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료 수급 안정성, 원가 경쟁력 제고 등 운영효율 향상
- **(생산최적화)** 현대케미칼이 보유한 정유시설을 활용하여 정제 마진을 감안한 「정유·석화제품」 간 생산비율을 유연하게 조절

③ 고부가·친환경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

- **(고부가)** 전선·케이블용 고탄성·고유연 플라스틱, 이차전지 충·방전 핵심소재인 전해액용 유기용매 생산 추진
- **(친환경)**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국제인증(ISCC) 친환경 제품 생산 및 납사 대비 탄소배출이 최대 50%까지 낮은 에탄 도입 추진

④ 자구노력 및 효율 향상을 통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

- **(영업이익)** 사업재편기간('26~'28년) 이후 25년 적자(△4,303억원)에서 '28년 흑자로 수익 구조 대폭 개선
- **(부채비율)** 모회사 출자 등 자구노력 및 경영 효율화를 통한 부채비율 감소

4

향후 추진계획

□ 대산 1호 사업재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지원

- 기업 분할·합병 등 사업재편 이행* 관련 후속조치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기업 애로사항 발생시 신속 지원

* ①합병계약 등 체결 및 이사회 승인 ⇨ ②롯데케미칼 대산 분할 ⇨
③롯데케미칼 대산-현대케미칼 합병 ⇨ ④신설 통합법인 설립 ⇨ ⑤설비감축

□ 석화특별법 신속 시행을 통한 사업재편 지원 기반 마련

- 공정거래법 및 타법상 규제특례와 기타 지원사항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한 석화특별법 시행령* 조속 제정 ⇨ 석화특별법 본격 시행**

* 주요내용 : ①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규정, ②공동행위·승인 세부절차 및 방법 규정 ③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및 고부가전환 정의 규정 등 신설

** 석화특별법 시행령 제정·공포와 동시에 석화특별법 제정안 시행

□ 사업재편과 병행하여 고부가·친환경 전환을 위한 대규모 R&D 지원

- 「K-화학 기술로드맵」(25.12)을 바탕으로 대규모 R&D 사전기획점검(26.1월~)

☞ K-화학산업 대전환 혁신 기술개발사업(안)

(주요내용) 고부가 화학소재 고도화 기술개발, M.AX 활용 석유화학 AX·DX 대전환

☞ 산업 GX 플러스 사업(안)

(주요내용) 온실가스 다배출산업(석유화학, 디스플레이, 반도체, 비금속 등)의 공정혁신 및 실증 지원

□ 사업재편 이후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

- 화학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,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경제·고용 안정을 위한 「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대책*」 마련('26.상반기)

* 주요내용 : ① 화학산업 M.AX·고부가 대전환, ② 지역경제 및 고용 영향 최소화
③ 민간 투자확대, ④ 수출 활성화 및 통상대응 체계 고도화 등